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12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이인선·조승래·조정훈

박상웅 • 김성원 • 정희용

최수진 • 박수민 • 이달희

한준호 · 정동만 · 최은석

황정아 · 장철민 · 권영세

홍기원 • 송기헌 • 이기헌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도 좌우할 만큼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아울러,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 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에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컴퓨팅 등 기술의 경쟁력·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투자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국 정부에서도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AI) 기술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나, GPU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R&D 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인공지능(AI)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들의 적극 투자를 유인 및 지원하는 한편,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5조 신설 및 제144조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 과세연도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으로인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지출(이하 이 항에서 "투자등"이라 한다)이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등을 한 금액의 100분의 1 (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등을 한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범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를 "제24조, 제2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 및 투자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2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u>바이오</u>	바이오의	
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	<u>약품, 인공지능</u>	
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		
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		
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		
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		
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 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 지 각 과세연도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3호에 따 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 입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클 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자 본적 지출을 포함한다)한 경우 에는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지출(이하 이 항에서 "투 자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 도에 투자등을 한 금액의 100 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2.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 도에 투자등을 한 금액이 해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2항,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 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등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클라우드컴퓨 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의 범위, 클라우드컴퓨 팅서비스 이용비용의 계산방법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u>제24조,</u>	제25조

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 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 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 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 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 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 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 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 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 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 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 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u>제24조</u>, 제25조의 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 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 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 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 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 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 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 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 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 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 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생 략)

-----제24조, 제25조----③ (현행과 같음)